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21. 3

서울특별시
세무과

차 례

[1]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연혁	5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6
[3] 지방소득세 조문 체계	11
[4] 지방소득세 용어 정의	13
[5] 법인지방소득세	
1. 통칙	15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21
3.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40
4.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45
5.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47
6. 동업기업 과세특례	54

※ 본 서의 내용 중 약어로 표시된 관계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령명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시
지방세기본법	지기법	지기령	지기칙	지방세기본법 제1조 ► 지기법 §1
지방세징수법	지징법	지징령	지징칙	지방세징수법 제1조 ► 지징법 §1
지방세법	지법	지령	지칙	지방세법 제1조제1항 ► 지법 §1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지특법	지특령	지특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 지특법 §1
국세기본법	국기법	국기령	국기칙	국세기본법 제1조 ► 국기법 §1
법인세법	법인법	법인령	법인칙	법인세법 제1조제1항 ► 법인법 §1①
소득세법	소법	소령	소칙	소득세법 제1조제1항 ► 소법 §1①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조특령	조특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 조특법 §1

1 |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연혁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 비중이 높아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발전이 지역세 수와 연계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0년 舊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4년에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형태로 전환하여 개인과 법인의 과세표준에 각각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개인은 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의 10%를 차감하되, 법인은 별도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지 않도록 개편하였습니다.

구분	개인	법인	비고
~ 2009년	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 2013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세목 조정
2014년 ~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세목 조정, 과세체계 개편
2015년 ~		내국법인 특별징수 시행	이자·배당 소득

❖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종전 : sur-tax 구조〉		〈현행 : 독립세 전환〉
지방소득세	법인분 개인분	부가세율 10% 법인분 세율 1.0%~2.5% 개인분 세율 0.6%~4.5%

개편된 과세체계에 의한 지방소득세는 2014. 1. 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특별징수(원천징수)는 종전과 같은 부가세방식을 유지하되, '15. 1. 1.부터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① '21년 2월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지령 §100조의19]

- 제출 의무자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등) 특별징수의무자
- 제출처 :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제출 시기 : '20년 특별징수분에 대해 '21년 3월 2일(화)까지 제출
- 제출 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 서식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지침 별지 제42호의4 서식]
※ (작성요령 참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제출 방법

제출 유형	제출 방법	제출 장소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전산매체(CD, USB, DVD) 인편/우편 제출	자치구
엑셀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자치구
	전산매체(CD, USB, DVD) 인편/우편 제출	자치구
기타	서면 제출	자치구

※ 상세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제출 특례 : 지점법인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본점법인, 수임업체 자료를 일괄 대리제출하는 세무
대행인은 특별징수의무자 본점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출

※ 엑셀 작성 양식 제공 ☞ 위택스·이택스·자치구

②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③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본점 · 주사무소 소재지)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특별시·광역시 내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납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①종업원수 많은 사업장 소재지 구, ②안분율이 큰 사업장 소재지 구)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하여 신고·납부
 - 총 종업원수 대비 당해 지자체 종업원수와 총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대비 당해 지자체 사업장 연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

④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1. 4. 30.(금)까지 4 고납부 (연결법인은 5. 31.까지)

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
- 단,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

○ 세율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법인세 총결정세액	10%	2억원 이하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 1% 2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 × 2%)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 × 2.2%)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 초과금액 × 2.5%)

⑥ 세액 공제·감면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공제·감면을 반영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득세 산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계산하여야 하나, 현재 과세표준 이후 세액 공제·감면 규정 없음(지특법)*

* 조합법인 등 과세특례 : 조특법 §72①의 법인세 세율(9%, 12%)의 1/10 (지특법 §167)

* 단,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 감면)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규정 존재

⑦ 수정신고 등 신고기한

-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시 개편된 과세체계 (독립세 방식) 적용

-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2013.6.1. ~ 2014.5.31.인 경우 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 '13.12.31. 이전 사업연도분의 결정·결정 및 수정신고는 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법인세 결정·경정,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시 : 법인세 신고 + 1개월	법인세 결정·경정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시	법인지방소득세 지자체 결정·경정전까지 신고 사유 발생시 수정신고 (법인세 수정신고시) 동시 연장되지 않음 (※단, 외국법인은 동시 연장)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 + 1개월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3개월내)	

⑧ 신고 특례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구 지방세법 §91⑤) 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만 변동세액 발생시 ⇒ 발생 사업연도 소득 확정신고시 가감 가능	신고 없이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

*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결손법인도 신고해야 함

⑨ 제출 서류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①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②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 및 명세서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재무상태표, ③ 포괄손익계산서, ④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⑤ 세액조정계산서 ⑥ 안분명세서 (단일사업장 제출제외)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 ①~⑥ 미제출시 무신고 간주. 단, ②~⑥은 본점 소재 지자체 제출시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제출한 것으로 봄

10 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확인 후 계산

11 신고·납부

- 사업장이 서울에 있는 경우 위택스(전국), 이택스(서울), 지자체(자치구)로 신고납부

구 분	사이트 주소	비 고
위택스	www.wetax.go.kr	전국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자체별 이택스	서울	etax.seoul.go.kr 서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부산	etax.busan.go.kr 부산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구	etax.daegu.go.kr 대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인천	etax.incheon.go.kr 인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이택스(서울)의 경우 서울시 사업장 지방소득세만 신고·납부 가능

12 신고·납부 방법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선택 (또는 특별정수)

구분	신고·납부 방법
일반법인 신고	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납부
파일첨부 신고	회계프로그램(더존, 세무사랑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신고·납부

-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파일 업로드로 신고 가능한 법인구분(법인코드)

- 일반법인(01), 연결법인(02),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 정산(03),
-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04), 외국법인 증여소득(05), 외국법인 인적용역(06)
- 비영리내국법인 양도소득(11),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14)

* 청산소득(준청산소득) 법인은 납세지 지방자치단체로 서면신고

« E-Tax »

The screenshot shows the Seoul City ETAX website. At the top, there's a banner with the text "매월 10일은,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마감일입니다." (Every 10th day is the deadline for地方所得税(特别征收), 居民税(从业员部分) declaration and payment). Below the banner is a search bar with placeholder text "납부번호 입력" (Enter payment number) and a yellow "조회" (Search) button. To the right of the search bar is a link "납부번호 확인방법" (Method to check payment number). A central graphic shows a person using a laptop with a magnifying glass over it. Below the search area is a navigation menu with icons for "조회날부" (Search date), "신고납부" (Declaration and payment), "납부(영수증)확인" (Check receipt), "환급금" (Refund), "나의ETAX" (My ETAX), "지방세정보" (Local tax information), "ETAX이용안내" (ETAX usage guide), and "별인세무조사" (Other tax audit). Below this menu are several smaller links: "모바일서비스조회" (Mobile service inquiry), "고장내 이리계산" (Calculate interest within the city), "취득세 신고" (Declaration of acquisition tax), "건강고지 신청" (Application for health declaration), "등록면허세신고" (Declaration of registration license tax), "특별징수분 신고" (Declaration of special collection amount), and "증정원분 신고" (Declaration of gift recipient). On the left side, there's a "공지사항" (Notice) section with various announcements. On the right side, there's a "비리·부당·청탁 등 신고안내" (Report on corruption, abuse of power, and kickbacks) section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신고사이트 '동갑소' 바로가기" (Direct link to the reporting site '동갑소') button. At the bottom, there's a footer with links to " 이용약관" (Terms of service), "개인정보처리방침" (Privacy policy), "119경찰상황" (119 police situation), "보안도구통합설치" (Integrated security tool installation), "회원부서선택" (Select department), "구주소찾기" (Find address by name), "ETAX이용문의" (ETAX usage inquiry), "1566-3900", "대법원연계 등록분신고" (Link to the Supreme Court registration), "서울특별시" (Seoul Special City), "신한은행" (Shinhan Bank), and a copyright notice "Copyright © 2013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SHINHAN BANK. All Rights Reserved".

* E-Tax의 경우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신고 가능

« We-Tax »

The screenshot shows the We-Tax websit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menu with links to "신고하기" (Declaration), "납부하기" (Payment), "납부결과" (Payment result), "환급신청" (Refund application), "부가서비스" (Additional services), "지방세정보" (Local tax information), "나의 위택스" (My We-Tax), and a search icon. To the right of the menu is a "친환경"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친기후" (Climate friendly) link. Below the menu, there's a large banner with the text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National local tax declaration and payment service). To the right of the banner is a cartoon character holding coins. There are also several circular icons representing different tax types: "지방세납부" (Local tax declaration), "지방세납부결과" (Local tax declaration result), "등록면허세(등록분)" (Registration license tax (registration portion)), "특별징수" (Special collection), "납부확인서" (Payment confirmation certificate), "세외수입납부" (Other income tax declaration), "납부확인서" (Payment confirmation certificate), "납부확인서" (Payment confirmation certificate), "납부확인서" (Payment confirmation certificate), "납부확인서" (Payment confirmation certificate), and "납부확인서" (Payment confirmation certificate). On the right side, there's a sidebar titled "자주찾는 서비스" (Frequently used services) with links to "주간예언" (Weekly forecast), "고객센터" (Customer service), "나의 위택스" (My We-Tax), "지방세 안내" (Local tax information), "지방세 자료실" (Local tax materials), and "이용자 가이드" (User guide). At the bottom, there's a "TOP" button.

3 | 지방소득세 조문 체계

제1절 총칙 : 6개 조문(제85조~제90조)

- 정의, 납세의무자,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납세지 등, 비과세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12개 조문(제91조~제102조)

- 과세표준, 세율,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수정신고 등,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결정
- 가산세, 징수와 환급,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9개 조문(제103조~제103조의 9)

- 과세표준, 세액계산의 순서, 세율,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 기장 불성실가산세, 수정신고 · 결정 · 경정 · 수시부과 · 징수 · 환급

지방세법
(82개
조문)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3개 조문(제103조의 10~제103조의 12)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 6개 조문(제103조의 13~제103조의 18)

- 특별징수의무,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 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 납세조합의 특별징수, 비거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14개 조문(제103조의 19~제103조의 32)

- 과세표준, 세율, 세액계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수정신고 등, 결정과 경정
- 수시부과결정, 징수와 환급,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8개 조문(제103조의 33~제103조의 40)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과세표준, 연결산출세액,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 수정신고 · 결정 · 경정 및 징수 등, 가산세,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6개 조문(제103조의 41~제103조의 46)

-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결정과 경정, 징수
-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6개 조문(제103조의 47~제103조의 52)

- 과세표준, 세율
- 외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신고 · 납부 · 결정 · 경정 · 징수 및 특례
-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 5개 조문(제103조의 53~제103조의 57)

-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동업기업의 배분,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준용규정

**제11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1개 조문(제103조의 58)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제12절 보칙

: 6개 조문(제103조의 59~제103조의 64)

-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소액징수면제, 가산세 적용의 특례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4 | 지방소득세 용어 정의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

개인지방소득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
법인지방소득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소법 §1조의2①1]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법인 구분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비영리내국법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민법 §32조]

- “비영리내국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을 말한다.

[사립학교법 §2조2]

-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13]

-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자와 사업장

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장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사업연도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연결법인

연결납세방식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
연결법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
연결집단	연결법인 전체
연결모법인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
연결자법인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
연결사업연도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기타 : 그 외 용어의 뜻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 법인지방소득세

1 | 통 칙

① 납세의무자 [지법 §86] 법인세 규정 준용

-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미환류소득
내국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소득	과세	×	×	×
외국	영리법인	국내	국내원천소득	과세	×	×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수익사업만)	과세	×	×	×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	×	×	×	×	×

외국의 정부, 지자체 : 비영리외국법인으로 취급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취급

②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법 §34] 법인세 규정 준용

- ❖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
- ❖ 특별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는 때

③ 법인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지법 §87] 법인세 규정 준용

- ❖ 법인지방소득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 2. 청산소득
 - 3.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구 분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과세대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	국내 소재 주택, 비사 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법인세액	청산소득금액
세 율	1~2.5% 누진세율	1%, 2% (미등기 4%)	10%	1~2.5% 누진세율
신고·납부 기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④ 사업연도 [지법 §88] 법인세 규정 준용

❖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

- <1순위> 법령·정관상 1회계기간 (1년 초과 못함)
- <2순위> 설립신고(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한 기간
- <3순위> 1,2가 없는 경우 1.1.~12.31.

❖ 사업연도 변경

- 종전사업연도 개시일 ~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함

❖ 의제 사업연도

구분		의제 사업연도		
해산	합병·분할·	1사업연도 1.1	▲합병(분 할) 등기일	12.31
	위 외 해산	1사업연도 1.1	▲해산(파산) 등기일	12.31
청산	청산	1사업연도 1.1	▲잔여 재산가액 확정일	12.31
	사업 계속시	1사업연도 1.1	▲사업 계속 등기일	12.31
연결납세방식 적용		1사업연도 1.1	▲연결납세사업연도 개시일 전일	12.31
상법 등 조직변경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함		

기타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1사업연도 1.1	▲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날 ▣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 의제규정 적용 안함 ▣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미발생으로 신고시 : ~ 신고일까지 1사업연도로 봄	12.31
	설립무효 설립취소 판결	1사업연도 1.1	▲ 확정 판결일	12.31

⑤ 납세지 [지법 §89] 법인세 규정 준용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그 사업장 소재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 소재지)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
- ❖ [안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단,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연결법인은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
 -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주된 사업장(지침 §39조) 소재지 구

[지침 §39]

- . “주된 사업장”이란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다만,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을 말한다.

《안분율》

$$\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quad \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text{종업원수} \quad \text{건축물 연면적}} + \frac{\text{법인의 총} \quad \text{법인의 총}}{\text{종업원수} \quad \text{건축물 연면적}} \right) \div 2$$

※ 소수점 6자리까지 산정 권장

« 안분 방법 »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세율

× 안분율

사업장별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서울시세감면조례의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 지법§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무기장 등)는 안분하여 가산

+ 추가납부세액 ▶ ○ 이월과세 및 지법§103조의63 등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사업장별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 안분율) 차감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본점 ◉ 일괄 환급, (총부담세액+환급세액) 차감

- 본점 외 ◉ 납부할 세액 0원, (총부담세액)만큼 차감

± 경정·수정신고 기감액

차감 납부할 세액

○ 舊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기감하는 경우 및 동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과다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참고)

- 종업원수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
- 건축물 연면적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 단,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 사업장이란 :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인적설비 :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물적설비 :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

[지령 §78조의3]

- . 종업원의 범위 :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단, 국외근무자는 제외
- . 계약 :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간주

[건축법 §2①2]

-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 안분 세부 적용기준 [지침 §38의5 별표4]

1. 종업원 수

구분	적용례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나. 대표자	종업원 수에 포함
다.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
라.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국내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등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원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수임 처리하기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종업원 수에 포함
아.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자.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
차.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

2. 건축물 연면적 등

구분	적용례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중인 공실의 연면적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사용하던 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적 미사용 상태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나.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의 연면적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다. 공동도급공사 수행을 위한 현장사무소의 연면적	각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무소의 경우로 실제 사용면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도급공사 지분별로 안분
라. 건설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음
마.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아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연면적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바. 수평투영면적의 적용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적용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설계 도면상 면적을 적용
사. 기계장치의 범위	기계장치란 동력을 이용한 작업도구 중 특정 장소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적용함

⑥ 비과세 [지법 §90] 법인세 규정 준용

-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① 과세표준 [지법 §103조의19] 법인세 규정 준용

-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
 -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함
 -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함

② 세율 [지법 §103조의20] (법인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과세표준	세법상 계산법		누진공제액을 통한 계산법	
	세율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과세표준 × 1%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 초과 × 2%)		과세표준 × 2%	200만원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 × 2.2%)		과세표준 × 2.2%	4,200만원
3,000억원 초과 ¹⁾	65억5천800만원 + (3,000억원 초과 × 2.5%)		과세표준 × 2.5%	9억4,200만원

1)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 조합법인 등 [지특법 §167] (법인세율의 10%)

과세표준	연도별 적용 세율	
	'14년 이전	'15.1.1.이후 개시사업연도
20억원 이하	0.9%	0.9%
20억원 초과		1.2%

③ 세액 계산 [지법 §103조의21] (법인세 계산 절차 준용)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① 각 사업연도 소득,
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③ 미환류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¹⁾ + 가산세²⁾ - 기납부세액³⁾

1) 조합 법인 등 과세특례 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2)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

3)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중간예납제도가 없으므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text{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frac{12}{\text{사업연도 월수}} \times \text{세율}) \times \frac{\text{사업연도 월수}}{12}$$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④ 세액공제·감면 [지법 §103조의22]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

❖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며, 현재 아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지특법 §16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0.9~1.2% 세율 적용

※ 서울 - '15년 이후 사업연도분부터 0.9%, 20억 초과시 1.2%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1조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50% 경감한다. 단, 3년 이내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해산사유(합병·분할 제외)가 발생한 경우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1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지법 §103조의23]

❖ 신고기한

-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함

❖ 제출서류 및 납부서식

구분	제출 서류	지침서식
신고서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3호
첨부1	② 재무상태표, ③ 포괄손익계산서, ④ 이익잉여금처분(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⑤ 세무조정계산서(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⑥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사업장'16년 신설, 舊 안분내역서로 제출)	43호의2 44호의6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⑦-1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 ⑦-2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 ⑦-3 표시통화재무제표, 원화재무제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 ⑦-4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제표, 합병법인 등의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43호의3
첨부2	⑧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⑨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⑩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⑪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⑫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⑬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⑭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43호의4 43호의5 43호의6 43호의9 43호의11 43호의12
납부서	⑮ 납부서 ⑯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 수기 납부서 지양)	14호 43호의8

【 Check 】

-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 ▶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 신고기한 연장으로 동시 연장되지 않음 (단, 외국법인은 동시연장)
-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만 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 ▶ 안분명세서는 서울 내의 한 개의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제출 제외
- ▶ 첨부서류 미제출시(②~⑥) ☐ 무신고 간주(단,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제외)
 ※ 단,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지자체 제출시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봄

⑥ 수정신고 등 [지법 §103조의24]

-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지자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
- ❖ 경정 등의 청구를 하려는 법인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납세지별로 각각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해야 함
- ❖ 본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 지방세법 제103조의 23에 따라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가 있는 경우,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법인의 수정신고·경정 청구·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은 없음
- ❖ 다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됨
※ 17. 1. 1. 이후 신고·납부한 분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

【 Check 】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적용 가능 (지기법 §49, §57)
 - 단, 세무공무원(국세공무원 포함) 조사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시 감면 제외 (지기령 §36)
- ▶ 세무서로부터 경정 받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

⑦ 결손금 소급 공제 [지법 §103조의28]

- ❖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신청 가능
- ❖ 조건
 - 중소기업
 -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환급 신청

-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경우 적용
- 신고기한 내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단,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봄

❖ 한도

- 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산출세액¹⁾ - 감면세액

¹⁾ 지법103조의 31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제외

❖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소급공제를 받은 금액

) × 직전 사업연도
 세율

- ❖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 또는 과세표준 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환급세액을 추가로 환급
- ❖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법인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환급세액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로 징수
 - * ①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감소, ②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환급금 감소, ③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의 신청에 따른 환급

⑧ 특별징수 [지법 §103조의29, 지법§103조의52]

- ❖ 특별징수란 특별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할 때에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금을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
- ❖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를 할 경우

-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를 적용한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함
-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
 - ❖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7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를 할 경우
 -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함
 -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무납부나 과소 납부한 경우
 - 「지방세기본법」 제 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④ + ⑥ ※ 미(과소)납부세액의 10% 한도 ④미(과소)납부세액 × 3% ⑥미(과소)납부세액 × 25/100,000 × 지역일수
--------------------	---

-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액만을 부과(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별징수의무자일 경우 가산세 부과 제외)
- ❖ **특별징수 대상과 세율** [지법 §103조의29, 법법 §73, 소법 §127①1,2, 소법 §16,17]

대상 소득		원천징수 세율	특별징수 계산세율
1. 이자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14%	1.4%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2.5%
2. 배당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의 이익	14%	1.4%

- ❖ **납세지** [지법 §89]
 -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특별징수의무자		납세지
법인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독립채산제에 의한 독자적 회계처리시 그 사업장 소재지 - 단,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의 지급지(계좌 개설지)
개인	거주자	· 주된사업장 소재지 - 주된사업장 외 소재지에서 특별징수시 그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
	비거주자	·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 주된 국내사업장 외 국내사업장에서 특별징수시 그 국내사업장 소재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거류지 또는 체류지

[참고]

- **독립채산제** :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 하에 입금 또는 지출 처리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함.
- **지급지 판단** : 사실상의 소득의 지급지에 대한 판단은 이자소득의 발생 및 지급과정 등 제반 업무를 고려할 때, 예치대상자 선정, 예치한 금액의 관리, 이자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 이자소득 지급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곳을 사실상 소득의 지급지로 판단함 (지방세운영과-614, 2010.2.9.)

❖ 특별(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지기법 §56]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무납부나 과소 납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 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액만을 부과(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별징수의무자일 경우 가산세 부과 제외)

(~'12년) 과소·무납부세액 × 10% (舊 지법 §96)

('13년~)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text{과소·무납부세액} \times 5\% + (\text{과소·무납부세액} \times 3/10,000 \times 18.12.31까지 경과일수) + (\text{과소·무납부세액} \times 25/100,000 \times 19.01.01이후 경과일수)$$

('16년~)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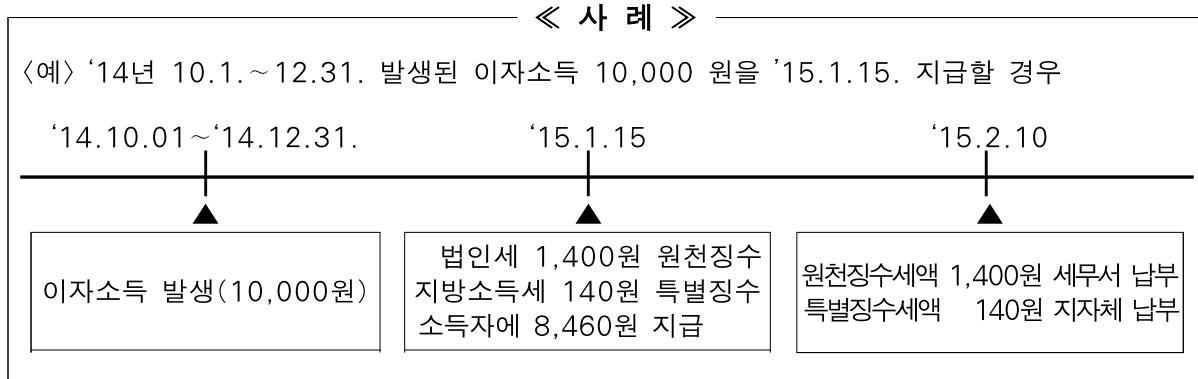
$$\text{과소·무납부세액} \times 3\% + (\text{과소·무납부세액} \times 3/10,000 \times 18.12.31까지 경과일수) + (\text{과소·무납부세액} \times 25/100,000 \times 19.01.01이후 경과일수)$$

※ 단,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를 한도

❖ 시행시기

- 특별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지급기준으로 2015년 1월 1일 이후 징수분

-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여야 함
 - '14.12.까지 : 법인세만 14(25)% 원천징수
 - '15.1월부터 : 법인세 14(25)% + 법인지방소득세 1.4(2.5)% 원천(특별)징수



❖ 특별징수영수증 발급 및 특별징수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 [지령§100조의19]

- 특별징수의무자 ↳ 납세의무자에게 특별징수영수증 발급의무 [제42호의4 서식]
 - ▶ 단, 법인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시 납세자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한 경우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봄
 - ▶ 계좌별로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년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발급 생략 가능하나, 납세의무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함
-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로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제42호의4 서식)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방법 »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제출
 - 제출서식 : 지침 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21년 3월 2일(화)까지
 - 제출장소 :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지방소득세팀)
※ 제출특례 - 지점법인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본점법인, 수임업체 자료를 일괄 대리 제출하는 세무대행인은 특별징수의무자 본점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출
 - 제출방법
 - 위택스에서 제공한 파일제출 매뉴얼에 따라 작성 ↳ 위택스 전자제출 (단, 20MB이하)
↳ 지자체 방문제출 (CD, DVD, USB)
 - ※ 더존·세무사랑 등 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 기능 제공
위택스·이택스·지자체에서 제공한 엑셀양식에 작성 ↳ 이택스·위택스 업로드 제출
↳ 지자체 담당 행정메일로 제출
 - 서면 제출 [지침 별지 제42호의4 서식] ↳ 지자체 제출
 - 유의사항
 - 전산매체를 통한 제출시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
 -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위택스(wetax.go.kr) - 행정안전부 운영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사이트
이택스(etax.seoul.go.kr) - 서울시 운영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사이트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징수세액 차감방법

-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가 이루어져 기 납부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
(별지43호의5 서식(갑),(을),(병))
 - ▶ 양도담보설정 채권이 있는 법인의 경우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병)서식 함께 제출
 - ▶ (작성시 참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기납부세액 차감 방법]

① [법인 총세액 기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 **안분율로 기납부세액(특별징수세액) 차감**

▶ 총부담세액 100만원, 기납부세액 50만원, 안분율(서울 60%, 부산 40%)일 경우

구분	합계	서울(본점)		부산	
총부담세액	100만원	60만원	60%	40만원	40%
기납부세액	50만원	30만원	60%	20만원	40%
납부할세액	50만원	30만원		20만원	

② [법인 총세액 기준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 **특별징수세액 본점 일괄환급**

- 본점 : 「**총부담세액 + 환급세액**」 차감 ↳ 본점 소재지 지자체 일괄 환급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본점 외 : 「**총부담세액**」 만큼 차감 (납부할 세액 0원)

▶ 총부담세액 100만원, 기납부세액 150만원, 안분율(서울 60%, 부산 40%)일 경우

구분	합계	서울(본점)		부산	
총부담세액	100만원	60만원	60%	40만원	40%
기납부세액	150만원	110만원	60+50	40만원	=총부담세액
납부할세액	△50만원	△50만원		0	

9 전자 신고·납부

❖ 전자신고란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

❖ 전자신고 방법

- 파일신고방식 : 세무대행인 또는 납세자가 세무회계 S/W에서 작성한 신고서 파일을 사용자의 PC에 다운로드하여 위택스 또는 이택스로 접속하여 전송(업로드)하는 방식
 - 위택스(wetax.go.kr) : 전국법인 신고가능, 대행인의 경우 신고전 대행인 승인절차 필요
 - 이택스(etax.seoul.go.kr) : 서울사업장에 한해 신고가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신고서 작성 방식 : 세무대행인 또는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직접 신고 내용를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 Check 】

- ▶ 신고서 작성 후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납부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 필요

⑩ 가산세

❖ 기본법 가산세 (지기법 §52 ~ 57조)

구분		지방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비고
무신고	일반	납부세액 × 20/100	Max(납부세액 × 20/100, 수입금액 × 7/10,000)	
	부정	납부세액 × 40/100	Max(납부세액 × 40/100, *국제거래 발생분 60/100 수입금액 × 14/10,000)	
과소 신고	일반	납부세액 × 10/100		
	부정	납부세액 × 40/100	Max(납부세액 × 40/100 *국제거래 발생분 60/100 수입금액 × 14/10,000)	
초과환급 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 10/100		
	부정	부정과소신고와 동일		
부당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 40/100	
납부(환급) 불성실	납부	미납세액 × 25/100,000		일수계산
	환급	초과환급세액 × 25/100,000		
가산세감면	기한후 신고	1개월 내 50%, 3개월 내 30% 6개월 내 20%		
	수정 신고	1개월 내 90%, 3개월 내 75%, 6개월 내 50%, 1년 내 30%, 1년 6개월 내 20%, 2년 내 10%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예정신고 무신고· 과소신고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관련하여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 및 수정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50% 감면		

【 Check 】

- ▶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수입금액 기준 무신고·과소신고 등 가산세 계산 규정 없음
- ▶ 지방세는 의무위반별 가산세 한도 규정 없음. 단, 현재는 국세 가산세의 10%로 개정되어 가산세 한도 적용된 금액임.

❖ 지방세법 가산세 [지법 §103조의30]

-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2~9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100
- 무기장 가산세(법법 §75③)와 무신고·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지기법 §53, §5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가산세액만 적용,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적용
-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안분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안분하여 징수

«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2~9 가산세 »

가산세 구분	가산세액	조항
①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 법인세 산출세액 × 5%	제75조
② 주주 등 명세서 제출불성실	▶ 미제출 · 누락제출 · 불분명분 주식등 액면가액 × 0.5%	제75조의2
③ 무기장 등 불성실 가산세	▶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 미 이행시 MAX(산출세액의 100분의20,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제75조의3
④ 기부금 영수증 불성실	▶ 사실과 다른 영수증 발급금액 × 2% ▶ 기부자별발급명세 미작성 · 미보관 금액 × 0.2%	제75조의4
⑤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 미수취 · 사실과 다른 수취금액 × 2%	제75조의5
⑥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 가맹점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1% ▶ 건별 MAX(거부 · 불분명 금액×5%, 5천원) ▶ 미발급금액 × 20%(7일이내 자진신고·발급시 10%)	제75조의6
⑦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 미제출 불분명 지급금액 × 1%	제75조의7
⑧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 미제출 · 불분명분 공급가액 × 1% ▶ 미발급 · 기공발급 · 허위수수분 공급가액 × 2% ▶ 합계표 미제출 · 불분명분 공급가액× 0.5%	제75조의8
⑨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 미제출 · 불분명 배당가능유보소득금액 × 0.5%	제75조의9

❖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지법§103조의57]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의 가산세로 징수

종류	요건	내용	지방소득세
①동업기업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조특법§100의25)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경우	• 무신고 → 소득금액의 4% • 과소신고 →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의 2%	국세 가산세의 10%
②동업기업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조특법§100의25)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한도 : 미납세액의 10% ①미납금액×0.025%×미납일수 ②미납세액의 3%	국세 가산세의 1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세 적용 특례 [지법 §103조의61]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상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상 과소신고가산세도 미부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 ① 과세당국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증명자료를 보관·비치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지법 §103조의31] 법인세 규정 준용

❖ 특례 취지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
- 법인의 부동산 투기방지 및 주택을 통한 재산증식 억제 목적, 개인 부동산 양도차익과의 형평성 고려

- 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은 익금항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되며, 다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이중과세

❖ 과세대상 및 세율 (국세의 10% 수준 지방소득세율 적용)

-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1%(미등기시 4%) [법법§55조의2①,②]

————— 《과세 제외 주택》 ————

- ▶ 일정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등)
- ▶ 임원 및 직원에게 장기 제공하는 사택 (10년 이상)
-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 미경과 주택
- ▶ 기타 부득이하게 보유한 주택 등

- 비사업용 토지 : 1%(미등기시 4%) [법법§55조의2③]

- 보유기간 기준과 용도기준을 보아 비사업용에 해당하는 토지

————— 《비사업용 토지》 ————

○ 보유기간 기준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

- ▶ 3년 미만 보유
 - ① 보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② 보유기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 3년~5년 미만 보유
 - ① 보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③ 보유기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 5년 이상 보유
 -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③ 보유기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용도 기준

- ▶ 농지, 임야, 목장
 - 농·임·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 소유 토지
 - 도시지역 소재·사업관련성 없는 토지 등
- ▶ 주택 부수토지
 -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초과 토지
- ▶ 기타
 - 재산세 비과세·분리과세·별도합산 대상이 아닌 토지
 - 별장과 그 부속토지, 기타 업무무관 토지

【 Check 】

- ▶ 법법 §25①1호 중소기업의 경우 '1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적용 제외 (지법 법률 제12505호 부칙 §5)
- ▶ '09.3.16.~12.12.31.까지 취득한 자산 양도시 적용 제외
- ▶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세율 2% 적용 : '21.1.1이후 양도분부터(이전 양도분은 1%)

❖ 비과세 (단, 미등기 토지 등 양도소득은 과세) [법법§55조의2④]

- 과산선고에 의한 처분
- 법인 직접 경작 농지로서 일정한 경우의 교환·분할·통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 등 일정한 사유

❖ 세액 계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토지 등 양도소득^{*} × 1%, 2%(미등기 4%)

* 토지 등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양도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

(단,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은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과 양도비용 차감)

- 둘 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령 §92조의2⑨에 따라 산출

《법령§92조의2⑨》

- ▶ 둘 이상의 토지 등 양도시 각 자산별로 계산한 양도소득 합산
- ▶ 자산 중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아래 양도소득에서 순차 차감
 - ① 양도차손 발생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 ② 양도차손 발생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 (준용) 양도소득의 귀속연도, 양도시기, 취득시기 등 법령 §92조의2⑥에 따른

《법령§92조의2⑥,⑦》

- ▶ 토지 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 등 양도시에도 동일
- ▶ 예약매출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토지 등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 안분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와 면적으로 안분

[1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지법 §103조의31] 법인세 규정 준용

- ❖ 내국법인(연결법인 포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하는 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액에 추가하여 납부

□ 기업소득 환류세제 요약 (조특법 제100조의32②)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업·비영리법인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과세방식〉 개별기업 상황에 따라 투자포함방식, 투자제외방식 선택

2017년 과세연도까지 ※ 선택 시 3년간 의무적용

- 투자포함방식 : $(\text{소득} \times 60\sim80\%) - (\text{투자} + \text{임금증가} + \text{배당액 등}) \times 10\%$
- 투자제외방식 : $(\text{소득} \times 20\sim40\%) - (\text{임금증가} + \text{배당액 등}) \times 10\%$

2018년 사업연도 이후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투자포함방식 : $(\text{소득} \times 60\sim80\%) - (\text{투자} + \text{임금증가}) \times 20\%$
- 투자제외방식 : $(\text{소득} \times 10\sim20\%) - (\text{임금증가}) \times 20\%$

(가계소득 증대세제)

(14년 기획재정부 도입)

○ 근로소득 증대세제

-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한 임금증가분(임원, 고액연봉자 등 제외)
- 기업혜택 - 임금증가분의 10%(대기업 5%) 세액공제

○ 배당소득 증대세제

-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 직·간접적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 *고배당 주식으로 받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 \rightarrow 9\%$ 인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 1선택
*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이 120%이상 & 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10%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이 50%이상 & 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30%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 기업소득 환류세제

-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추가과세→ 기업소득이 가계소득 증가로 환류되는 선순환구조로 유도
- 적용대상 -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단, 중소기업·비영리법인 제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13]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지법 §103조의32] 법인세 규정 준용

❖ 수익사업

-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있으나,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없음
※ 해산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정한 자에게 귀속,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기부 또는 국가 귀속

❖ 이자소득

- 「지방세법」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로 종결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선택 가능
※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경정 등을 통해 이를 다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구분	제출 서류	서식
신고서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43호의6
첨부	②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③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④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44호의6 43호의5 43호의6부표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신고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무신고로 보지 아니함
-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의 비자·기장의무를 진다.(법법 §112조) 단, 기장의무를 지는 비영리법인이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법법 §75조의3)

❖ 자산양도소득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준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별지 43호의10서식) 제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 비영리법인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별지 43호의제10서식)를 제출해야 함
 - 예정신고·납부 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가능,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단,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2회이상 예정신고한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함

14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 등 법인세 규정 준용

❖ 「지방세법」 상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지법 §103조의63] ('16. 1. 1. 신설)

-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어 법인세(이자 상당가산액을 포함한다)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그 추가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

※ 대상

1. 「법인세법」 제29조제7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기산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기산액의 100분의 10
2.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 제10조의2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8조의 2제3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5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4제2항, 제47조의4제2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5항, 제62조제2항, 제85조의2제2항, 제85조의7제2항, 제85조의8제2항, 제85조의9 제2항, 제97조의6제3항 및 제104조의11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기산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기산액의 100분의 10

- 「법인세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 납부
-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납부하는 경우 그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대상

- 자경농지에 감면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사유 발생시(지특법 §129조)
-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사유 발생시(지특법 §132조)

3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지법 §103조의33]

법인세 규정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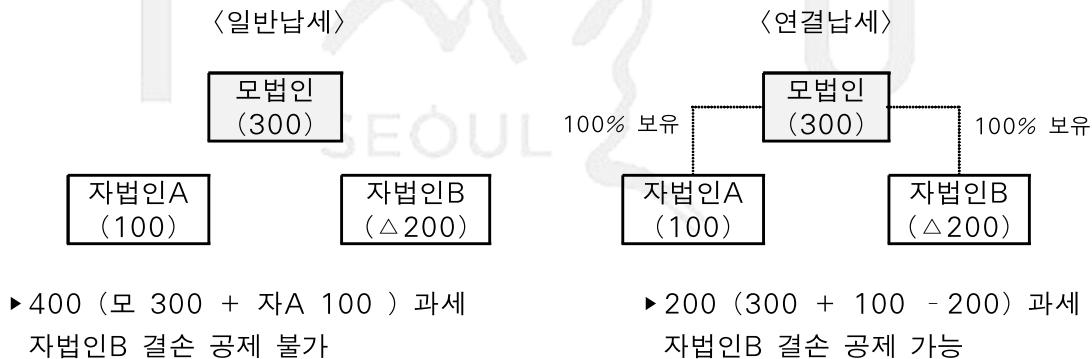
-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 「법인세법」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2 준용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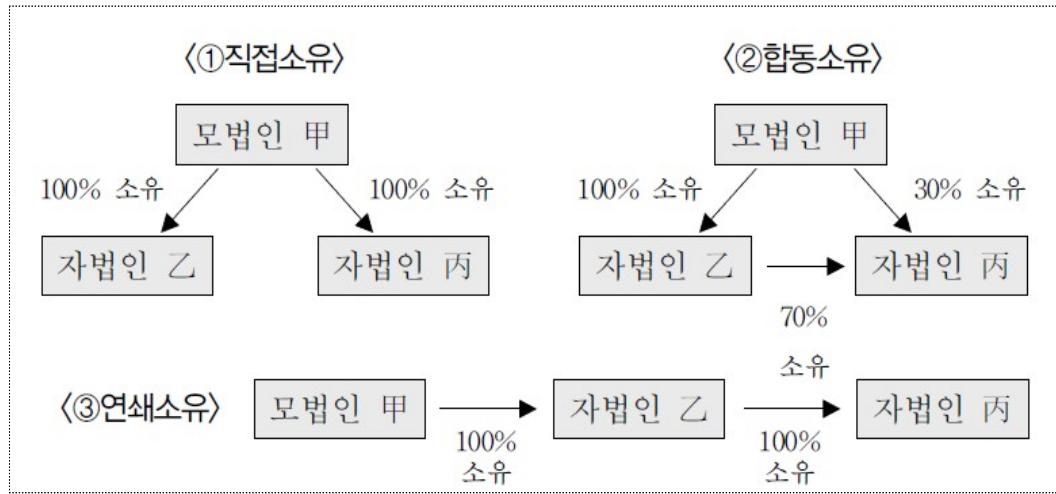
□ 연결납세 ('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 연결납세방식이란 경제적으로 결합관계에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각 기업의 소득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조세체계 선진화
- 모회사와 자회사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연결법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과세이연을 통해 세부담의 감소를 가져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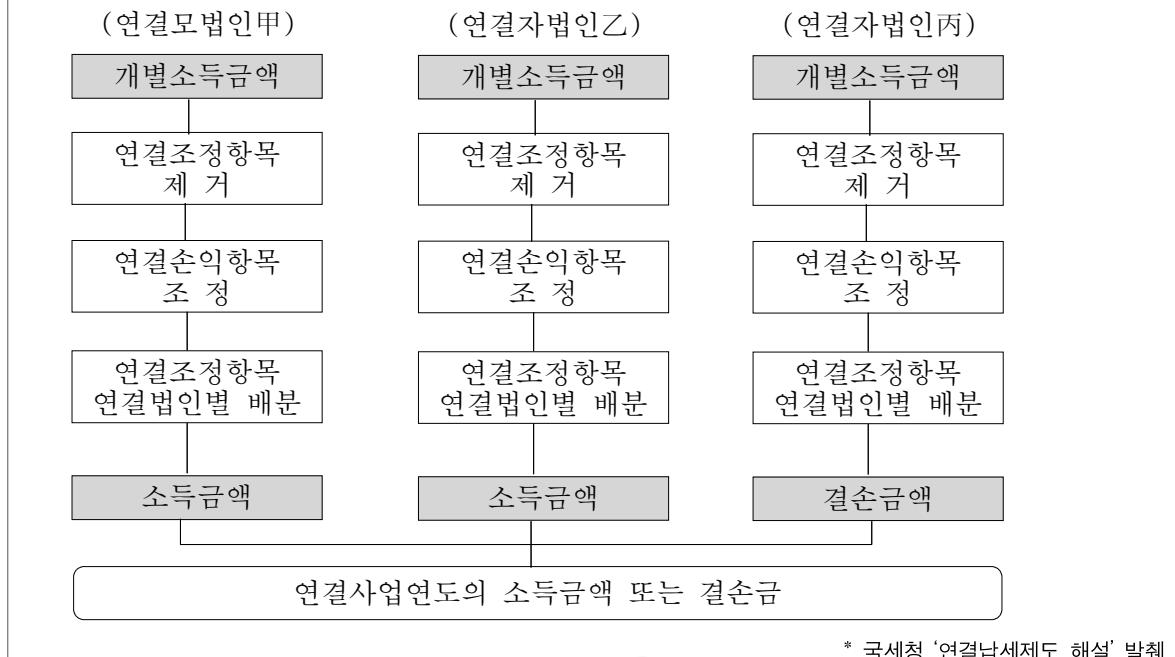
□ 결손금 통산 비교



□ 완전지배 유형



□ 연결법인별 연결소득(결손금) 금액의 합산 흐름도



* 국세청 '연결납세제도 해설' 발췌

② 신고·납부 의무

- ❖ 연결모법인 (자법인은 신고의무 없음)

③ 납세지

- ❖ 사업장 소재지. 단, 특별시·광역시에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
 -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①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② 안분율이 큰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

④ 과세표준 [지법 §103조의34] 법인세 규정 준용

- ❖ 「법인세법」 제76조의13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3조의 19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⑤ 연결산출세액 [지법 §103조의35] [법인세 계산 절차 준용]

연결산출세액 = 각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 1년으로 환산 (지법 §103조의21② 준용)

⑥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¹⁾ × 연결세율²⁾

¹⁾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²⁾연결세율 = 연결산출세액 / 과세표준

⑦ 신고납부 [지법 §103조의37]

-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⑧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서식
신고서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4호
첨부 1	각 연결법인의 ② 재무상태표, ③ 포괄손익계산서, ④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⑤ 연결집단 세액조정계산서* ⑥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연결집단용)	44호의2 44호의6
첨부 2	⑦ 지법 §103조의23② 각 호의 서류 ⑦-1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 연결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⑦-2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	44호의3 44호의4 44호의5
납부서	⑧ 납부서 ⑨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 수기 납부서 납부 지향)	14호 43호의8

【 Check 】

-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 ▶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시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 동시 연장되지 않음
-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만 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 ▶ 첨부서류 미제출시 ☐ 무신고 간주 (②~⑥)
※ 단,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지자체 제출시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봄

9 가산세 [지법 §103조의39]

-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가산세(지법 §103조의30) 적용

《사례》

1. 과세 자료

<법인세 과세자료>					<안분율> [*]			
구 분	합계	모법인S	자법인A	자법인B	구분	모법인S	자법인A	자법인B
각 사업연도 소득	-	80억	35억	△21억	서울	50%	30%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100억	90억	30억	△20억	부산	30%	-	-
연결방식 도입후 결손금	5억	-	5억	-	대구	20%	70%	100%
법인세 소득공제	15억	15억	-	-	합계	100%	100%	100%
법인세 세액공제	2.8억	1.85억	0.95억	-	*안분율 : p.23 안분방법 참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3억	2억	1억	-				

2.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계산 순서		모법인S	자법인A	자법인B	합계 및 계산
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90억	30억	△20억	100억 = 90+30-20
②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75억	25억	-	100억 × 9/12, 100억 × 3/12
③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60억	20억	-	80억 = (75-15)+(25-5)
④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	80억			80억 = 60억 + 20억
⑤	연결 산출세액	1.58억			1.58억 = 80억 × 2% -200만
⑥	연결세율	1.975%			1.975 = 1.58억 / 80억
⑦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11,850만	3,950만	-	11,850만 = 60억 × 1.975% 3,950만 = 20억 × 1.975%
⑧	서울시 산출세액	5,925만	1,185만		5,925만 = 11,850 × 50% 1,185만 = 3,950 × 30%
⑨	서울시 신고세액	7,110만			7,110만 = 5,925 + 1,185

3. 안분신고서 작성

⑯ 지방소득세 총액

71,100,000

⑰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법인명	관계	법인 등록번호	법인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	사업장별 산출세액	...	분류세율 적용 조정세액	납부 할 세액	본점 소재지 시군구
S	모	000	118,500,000	118,500,000	59,250,000	...		59,250,000	서울 종로구
A	자	111	39,500,000	39,500,000	11,850,000	...		11,850,000	대구 달서구
B	자	222	-	-	-	...		-	대구 달서구
합 계				71,100,000	...			71,100,000	



4

내국법인의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① 과세표준 [지법 §103조의41] 법인세 규정 준용

- ❖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

[법법 §79①]

.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

-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세율 [지법 §103조의42]

- ❖ 「지방세법」 제103조의 20 지방소득세율 적용 (1 ~ 2.5%)

③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청산소득)의 계산 : 잔여재산의 가액 - 해산등기일 현재 세무상 자기자본의 총액

④ 안분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 및 건축물 연면적

^{*}잔여 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사업계속 등기일

⑤ 확정 신고납부 [지법 §103조의43]

- ❖ 「법인세법」 제84조에 따른 확정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과 동일)

- 해산한 경우 : 잔여 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잔여재산의 일부 분배 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⑥ 중간신고 의무 [지법 §103조의43]

-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른 중간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 법인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

유 형	신고납부기한
잔여재산가액 확정전 일부를 주주 등에 분배	분배일로부터 1월 이내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1월 이내

※ 「국유재산법」 제80조(국가가 지분증권의 1/2이상 보유회사)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은 중간신고 의무 없음

⑦ 제출서류 및 납부 서식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5호 서식]
○ 납부서 [별지 제14호 서식 또는 제43호의8 서식]

【 Check 】

- ▶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법인세와 동일
- ▶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증가산금 미징수
- ▶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미과세 (지법§103조의46)

[법법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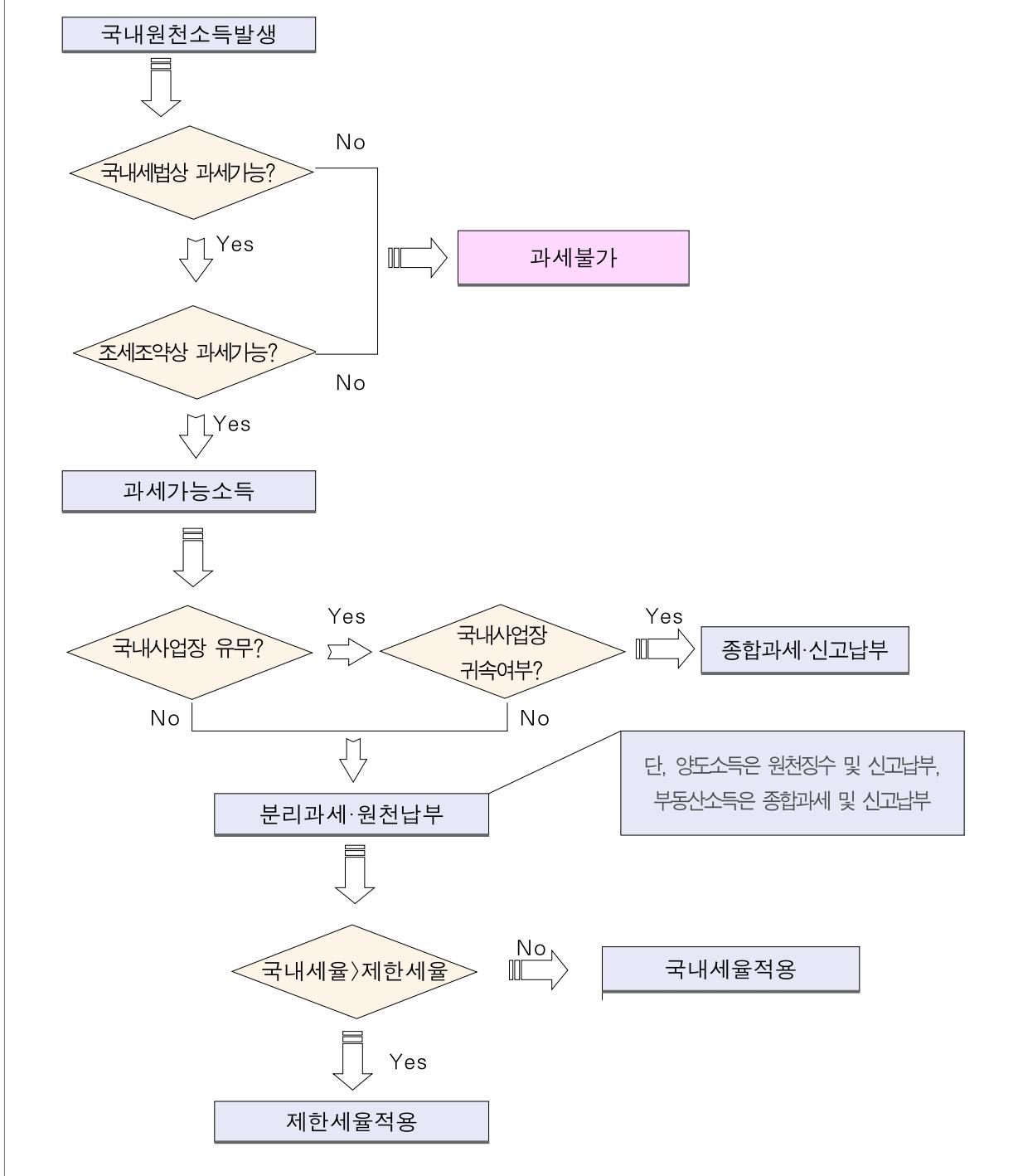
- .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비과세
 -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

5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1 과세방법 법인세 규정 준용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



② 과세표준 [지법 §103조의47] 법인세 규정 준용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법법 §93조 제3호)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과세표준 =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상호면제되는 외국향행소득

*법법 §93조제3호에 따른 소득 :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의 양도·임대 또는 그 밖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단, 동법 7호 소득(양도소득)은 제외

❖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과세표준 = 법법 §93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중 「법인세법」 *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

- 「법인세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과세표준 = 법법 §93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

*법법 §98조①, §98조의3, §98조의5, §98조의6

(요약)

- ▶ 종합과세대상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
 -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 종합과세대상 외 외국법인
 - 과세표준 = 국내원천소득금액
-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법법§93, 98)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 有		기타 외국법인	원천징수세율 (법법)
		법법§93	국내사업장에 귀속 ×		
1호	이자소득	종합과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채권14%)
2호	배당소득				20%
4호	선박등 임대소득				2%
5호	사업소득				2%
6호	인적용역소득				20%
8호	사용료소득		분류과세, 신고납부 (예납적 원천징수)	분류과세,신고납부 (예납적 원천징수)	20%
9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Min(양도가액의 10%, 양도차액의 20%)
10호	기타소득				20%
7호	양도소득				Min(양도가액의 10%, 양도차액의 20%)
3호	부동산소득		종합과세, 신고납부	-	-

【 Check 】

- ▶ 종합과세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종합과세
- ▶ 분리과세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완납적 원천징수)
- ▶ 분류과세 : 종합과세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별로 분류하여 세액을 계산

③ 세액 계산 및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지법 §103조의47⑤] 법인세 규정 준용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 준용

④ 세율 [지법 §103조의48]

- 법법 §93조제7호(양도소득)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1% ~ 2.5% 세율을 적용

- 지법 §103조의49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

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지법 §103조의49]

- 내국법인 세액계산(지법 §103조의31)을 준용하여 계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금액 - 양도당시 장부가액

※ 단,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법법 §92③ 준용하여 계산 : 장부가액 대신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차감

⑥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지점세) [지법 §103조의50]

- 영리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법법 §96에 따라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의 10분의1을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

[참 고]

▶ 외국법인의 지점 및 자회사 비교

국내에 지점(사업장) 형태 진출	국내에 자회사형태로 진출
외국법인의 지점은 독립된 법인이 아님 · 지점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 · 그 소득을 본점에 송금하는 경우 과세 제외	외국법인의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 · 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 · 그 소득을 모회사에 배당하는 경우 배당금에 대해 다시 과세

- ▶ (지점세)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국내 현지법인의 배당에 대하여는 과세하나, 지점인 경우 배당과세가 되지 않는 것과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유보이익 중 법인세 등과 재투자액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으로 보아 과세 (조세조약에 규정한 경우에 한함)
 - 과세대상 소득 × 20% (또는 조세조약상의 세율)

⑦ 신고납부 [지법 §103조의51] 법인세 규정 준용

- 법법 §93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및 법법 §97 준용

⑧ 신고기한 연장 [지령 §100조의27] 법인세 규정 준용

-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승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봄
-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기한연장일수에 지기령 §4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

【 Check 】

- ▶ 외국법인과 달리 내국법인은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이 동시 연장되지 않음에 유의

⑨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신고납부의 특례 [지법§103조의51⑤] 법인세 규정 준용

❖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과세기준 총족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동일한 사업연도(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총족하게 된 경우, 양도당시 특별(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관계 법령	법법 §98조의2①, 지령 §100조의28제1호
신고납부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국세 신고납부 기한 + 1개월)
서식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 정산신고서 (별지 제45호의2 서식)
납세지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법령 §138조의2)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납부할 법인세의 10%

※ 국내사업장이 있으나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도 준용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유가증권 양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식 등 유가증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나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특별(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 조특령 §18조④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주식 등 유가증권
- 외국에서 거래되는 원화표시 유가증권(외국유가증권시장외에서 거래되는 것)

관계 법령	법법 §98조의2③, 지령 §100조의28제2호
신고납부	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국세 신고납부 기한 + 1개월)
서식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 신고서 (별지 제45호의3 서식)
납세지	해당 주식 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법령 §138조의2)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납부할 법인세의 10%

❖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의 증여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당시 특별(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관계 법령	법법 §98조의2④, 지령 §100조의28제3호
신고납부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까지 신고납부 (국세 신고납부 + 1개월)
서식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별지 서식 제45호의 4서식)
납세지	해당자산의 소재지 (유가증권의 경우 발행 내국법인의 소재지)(법령 §138조의2)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납부할 법인세의 10%

⑩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납부 특례 [지법§103조의51⑥] 법인세 규정 준용

- 인적용역 소득이 특별징수되는 외국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 가능
(법법 §93제6호에 따른 영화·연극 배우, 음악가, 직업운동가, 변호사 등)

관계 법령	법법 §93조제6호, 지령 §100조의29
신고납부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서식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 (별지 제45호의5 서식) (첨부)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
납세지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과세표준 및 세율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소득-관련비용)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1~2.5%)

· 관련비용 : 항공료, 숙박비, 체재비 등

⑪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지법 §103조의52] 법인세 규정 준용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법 §98부터 §9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법법 §98조부터 §98조의7 준용

①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지법§103조의55] 법인세 규정 준용

-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 (조특법 §100조의15①)
- ❖ 동업기업과세특례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특법 §100조의 14부터 §100조의26까지 규정을 준용함.

○ 용어[조특법 §100조의14]

구 분	내 용
동업기업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동업자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배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동업자군)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지분가액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
분배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

② 납세의무자 [지법 §103조의53] 법인세 규정 준용

❖ 동업자

- 조특법 §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

❖ 동업기업 전환법인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조특법 §100조의16에 따른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율(1~2.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짐

③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계 법령	지령 §100조의30
신고납부	동업기업과 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준청산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서식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5호의6 서식) (첨부) 준청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안분기준일	준청산일 현재의 안분율
과세표준 및 세율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1~2.5%)

④ 동업기업의 배분 [지법 §103조의54] 법인세 규정 준용

- ❖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 단,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함.

배분 기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
세액공제·감면	지특법에 따른 세액공제·감면금액
특별징수세액	지법 §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세액
가산세	지법 §103조의30 및 지법 §103조의57에 따른 가산세 단, 법인 동업자에게만 배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지법 §103조의31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단, 법인 동업자에게만 배분

- 손익배분비율(조특령 §100조의17) : 동업자간에 약정한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의 분배에 관한 단일의 비율로서 신고한 비율, 단 약정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비율

⑤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지법 §103조의55] 법인세 규정 준용

- ❖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여 조특법 §100조의21①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함.

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지법 §103조의56] 법인세 규정 준용

- ❖ 조특법 §100조의24①에 따라 동업기업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 이내 납세지 관할 지자체 납부

⑦ 동업자 배분대상 가산세 [지법 §103조의57, 지령 §100조의32③] 법인세 규정 준용

❖ 지법 §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계산서 불성실, 신용카드거래 거부, 현급영수증 미가맹 및 발급거부 가산세 등 배분

❖ 조특법 §100조의25에 의한 가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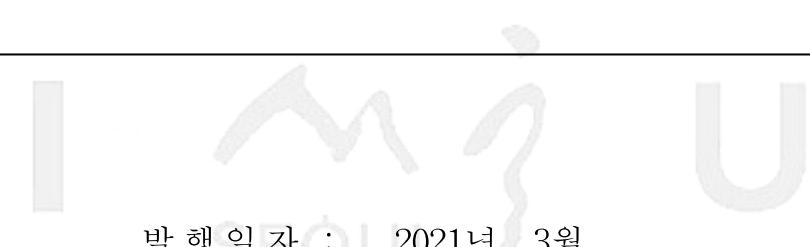
구 분	법인세 가산세액(Ⓐ)	지방소득세 가산세액(Ⓑ)
동업기업 배분명세 신고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신고 :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 4% ▶ 과소신고 : 과소신고 소득금액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10% ▶ Ⓐ × 10%
동업기업 특별징수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②),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 한도 ① 무(과소)납부한 세액의 3% ② 무(과소)납부한 세액×일수×25/1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10%

【 Check 】

- ▶ 동업기업에 대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징수되어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가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내 전액 납부하여야 함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적용할 때는 지방세관계법령과 예규 등의 원본을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2021년 3월
발행처 : 서울특별시 재무국
집필·편집 : 세무과장 천명철
 소득세팀장 배정희
 세무과 김익중
 세무과 나은산
 세무과 강경일
